

## 매매계약서

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- **제1조(계약의 목적)** 甲은 자신이 생산하고 있는 "A"제품을 20〇〇. 〇. 〇.부터 같은 해 〇월 ○일까지 매월 1,000개씩 합계 6,000개를 乙에게 매도한다.
- 제2조(단가) 제품의 단가는 금10,000원으로 한다.
- 제3조(인도시기 및 장소) (1) 甲은 乙에게 매월 25일까지 위 제품을 乙의 영업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한다.
  - (2) 만일에 甲이 매월 25일까지 제품을 인도하지 못할 시에는 乙은 미인도 제품 1개당 금1,000원의 지연손해금을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대금지급시기 및 지급방법)** (1) 乙은 매월 제품을 인도 받은 후 5일 내에 甲에게 대금을 지급하되,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.
  - (2) 만일에 乙이 제 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에게 미지급대금의 1할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5조(제품의 하자) 甲이 乙에게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甲은 乙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고 乙은 위 통지를 받은 후 5일 내에 완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.
- **제6조(계약의 해제)** (1) 甲과 乙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.
  - (2) 해제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관할법원)**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甲과 乙이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○○지방법원으로 한다.
-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, 각 서명·날인하여 각자 1통 씩 보관하다.

2000. 0. 0.

미}	주	소					
도 인	성 또 상	Horrica Horrica	ପ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
미	주	소					
수 인	성 또 상	BO 기기에	ପ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